

의안
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4. 1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안향자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483호

다. 제출일자 : 2022. 03. 31.

라. 회부일자 : 2022. 04. 01.

2.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제5조)

마.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대응 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
(안 제6조 ~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04. 01. ~ 2022. 04. 0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등

- 본 제정안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2021년 9월 말 기준 성북구 등록 정신장애인은 651명이며, 응급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성북·종암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의 응급입원 사례가 있음.

□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인권보장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사료됨.
- 또한,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 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보류의견을 요청한바,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 사료됨.